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신한 비엔피 파riba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한 비엔피 파riba 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13년 12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3년 12월 3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 또는 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용어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추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65654
종류 A1	65655
종류 A2	94039
종류 C1	94040
종류 C2	99621
종류 C3	99622
종류 C4	99623
종류 C5	99624
종류 C-i	76530
종류 A-u	28524
종류 직판	A0386
종류 A-u2	A3063
종류 A-e	AM395
종류 C-e	AM396
종류 C-v	AM39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전환형(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모집기간 :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www.shbnpp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 및 환매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한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65654
종류 A1	65655
종류 A2	94039
종류 C1	94040
종류 C2	99621
종류 C3	99622
종류 C4	99623
종류 C5	99624
종류 C-i	76530
종류 A-u	28524
종류 직판	A0386
종류 A-u2	A3063
종류 A-e	AM395
종류 C-e	AM396
종류 C-v	AM39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2.26	최초 설정
2009.01.01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 및 운용팀명 변경
2009.05.04.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주식 투자신탁-자(H) ⇒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2010.02.0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01.01) 사항 반영
2010.03.16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의 변경
2010.05.03.	판매보수 인하(종류C 수익증권) 및 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2009.12.21)
2010.06.30	엄브렐러 클래스 신설(종류 A-u 수익증권)
2011.01.17	CDSC 적용에 따른 종류 수익증권 명칭 변경 및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1.01.01) 사항 반영
2011.01.31.	종류 직판 수익증권의 신설
2011.05.23	엄브렐러 클래스II 신설(종류 A-u2 수익증권)
2012.04.0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2.01.01) 사항 반영
2013.10.31	클래스 신설 (A-e, C-e, C-v) 및 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013.12.11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2013.12.	운용전문인력 변경 - 변경 전: 추문성(책임운용역) - 변경 후: 주형준(책임운용역)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18,19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bnppam.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계약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 합니다.

①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해당 펀드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형]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비엔피 파리바 에셋 매니지먼트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업무위탁범위	운용업무, 운용지시, 단순매매주문업무

②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명	비엔피 파리바 에셋 매니지먼트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회사주소	프랑스 파리 클레버 5 애비뉴 (5 Avenue KLEBER 75016 Paris, France)
회사개황	주요주주: BNP Paribas 그룹 100% 소유 1964 BNP PARIBAS 내 자산운용업 시작 2002. 10. BNP PARIBAS 그룹이 신한금융그룹과 합작하여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지분 참여 2004. 8. 금융감독원에 외국자문회사 등록 2007년 초 BNPP AM 그룹의 운용규모는 약 1.835 조 EURO 홈페이지 : www.bnpparibas-am.com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3.11.30. 현재)

가. 운용전문인력

(1)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일임계약제외)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주형준	1977	책임 운용역	27개	9,177억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Univ. of Leeds 국제재무학 석사 삼성선물 법인영업팀 (05.03~07.0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안투자팀 (07.02~12.09)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12.09~현재)
-----	------	-----------	-----	---------	---------------------------------------------------------------------------------------------------------------------------------------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책임운용역이며, 부책임운용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 주 2)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4)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인 경우 관련 모투자신탁)의 해외자산운용은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에서 담당합니다.
- 주 5) 2013년 12월 30일자로 변경될 책임운용역의 내용을 선반영하였습니다.

(2)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①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일임계약제외)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주형준	1977	책임 운용역	27개	9,177억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Univ. of Leeds 국제재무학 석사 삼성선물 법인영업팀 (05.03~07.0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안투자팀 (07.02~12.09)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 (12.09~현재)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책임운용역이며, 부책임운용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 주 2)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4)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인 경우 관련 모투자신탁)의 해외자산운용은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에서 담당합니다.
- 주 5) 2013년 12월 30일자로 변경될 책임운용역의 내용을 선반영하였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2013.11.30. 현재) :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1)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① 책임운용인력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주형준	2013.12 ~ 현재
추문성	2011.03 ~ 2013.12
박재우	2009.01 ~ 2011.03
② 부책임운용인력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	-

주 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2)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①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① 책임운용인력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주형준	2013.12 ~ 현재
추문성	2011.03 ~ 2013.12
박재우	2009.01 ~ 2011.03
② 부책임운용인력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	-

주1)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이 투자신탁의 해외자산운용은 비엔피 파리바 에셋 매니지먼트(BNP Paribas Asset Management)가 담당합니다. 운용은 팀운용으로 이루어지며 책임투자운용인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운용현황 (2010.02.19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Hubert Goye	59억 유로	총 경력 20년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 20년) - BNP Paribas AM (10년) - Paribas AM (10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 투자신탁(주식형), 종류형, 모자형, 개방형, 추가형, 전환형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A1	A2	C1	C2	C3	C4	C5	C-i	A-u	A-u2	A-e	C-e	C-v	직판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력에 관한 사항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력
종류 A1	2007.10.16	제한없음
종류 A2	설정전	신규 또는 추가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종류 C1	2011.03.08	제한없음
종류 C2	설정전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3	설정전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4	설정전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5	설정전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되는 날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i	2007.11.28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 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종류 직판	2011.01.3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종류 A-u	2010.08.11	제한없음
종류 A-u2	2011.06.30	제한없음
종류 A-e	설정전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e	설정전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v	설정전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 위 종류 수익증권들은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 판매회사를 통해 전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다.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	환매시
종류 A1	납입금액의 1.00%	-
종류 A2	납입금액의 0.50%	-
종류 A-e	주1) 참고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10%
종류 A-u	납입금액의 0.90% 이내 ¹⁾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종류 C1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단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해 환매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징구하지 않음)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5	-	
종류 C-i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종류 직판	-	
종류 C-e	-	
종류 C-v	-	
종류 A-u2	납입금액의 0.98% 이내 ¹⁾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1)납입금액의 0.90%(종류 A-u), 0.98%(종류 A-u2)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종류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기간 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또한 아래 기간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를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

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종류 A-e 수익증권]

기간	선취판매수수료
설정일 ~ 2013.12.31	납입금액의 0.6% 이내
2014.01.01 이후	납입금액의 0.5% 이내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종류 A1	0.7800	0.7500	0.0600	0.0250
종류 A2	0.7800	0.7000	0.0600	0.0250
종류 A-e	0.7800	(주1)참고	0.0600	0.0250
종류 C1	0.7800	1.5000	0.0600	0.0250
종류 C2	0.7800	1.4000	0.0600	0.0250
종류 C3	0.7800	1.3000	0.0600	0.0250
종류 C4	0.7800	1.2000	0.0600	0.0250
종류 C5	0.7800	1.1000	0.0600	0.0250
종류 C-i	0.7800	0.1000	0.0600	0.0250
종류 직판	0.7800	-	0.0600	0.0250
종류 C-e	0.7800	(주 1)참고	0.0600	0.0250
종류 C-v	0.7800	0.0200	0.0600	0.0250
종류 A-u	0.7800	0.8500	0.0600	0.0250
종류 A-u2	0.7800	0.7700	0.0600	0.0250
지급시기	매 3 개월 후급			

(주 1)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판매보수는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합니다.

기간	판매회사보수(%)	
	종류 A-e	종류 C-e
설정일~ 2013.12.31	연0.450%	연0.600%
2014.01.01 이후	연0.375%	연0.500%

다.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전환형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간의 전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횡수제한은 없으며,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종류 A-u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

	펀드명
1	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 1 호
2	신한 BNPP BEST CHOICE 단기 증권 투자신탁 제 4 호[채권]
3	신한 BNPP 좋은아침 희망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4	신한 BNPP Tops Value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5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 2 호[주식]

6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7	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8	신한 BNPP 커머더티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채권-파생형]
9	신한 BNPP 봉쥬르 동남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10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상기 집합투자증권 중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A-u2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

	펀드명		펀드명
1	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1호	13	신한 BNPP 봉쥬르 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2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14	신한 BNPP 봉쥬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3	신한 BNPP BEST CHOICE 단기 증권 투자신탁 제4호[채권]	15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4	신한 BNPP 3대그룹주 Plus 증권 자투자신탁 제 1호[주식]	16	신한 BNPP 봉쥬르 유럽배당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5	신한 BNPP Tops Value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17	신한 BNPP Tops 일본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6	신한 BNPP 좋은아침 희망 증권 자투자신탁 제 1호[주식]	18	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7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9	신한 BNPP 커머더티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8	신한 BNPP 좋은아침 펀더멘탈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0	신한 BNPP 포커스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9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	21	신한 BNPP 에너지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10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오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22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11	신한 BNPP 봉쥬르 동남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23	신한 BNPP 탑스 글로벌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재간접형]
12	신한 BNPP 봉쥬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상기 집합투자증권 중 종류 A-u2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집합투자기구 중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경우, 2013년 12월 16일부터 변경되는 펀드명을 선반영 하였습니다. 이하 동 펀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13년 12월 15일 까지: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투자신탁[주식] 명칭을 적용)

◆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1) 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1호	주요투자대상	만기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만기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
	투자목적	채권,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증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추구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자산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최대한 안정성 추구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
2)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주요투자대상	만기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만기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
	투자목적	채권,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증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추구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자산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최대한 안정성 추구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
3) 신한 BNPP BEST CHOICE 단기 증권 투자신탁 제4호[채권]	주요투자대상	국내 채권
	투자목적	국채, 통안채, 우량회사채 등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리스크관리와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신용위험 최소화: 우량채에 한하여 투자 - 과도한 시장리스크 노출을 배제: 운용 듀레이션의 제한 및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헤지포지션으로 구성 - 차익거래성 매매비중 강화: 국채선물/국채현물간 차익거래성 매매 비중을 높여 안정되고 우수한 수익률 추구
4) 신한 BNPP 3대그룹주 Plus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 주식
	투자목적	투자대상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등에 투자하며, 나머지 자산은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 추구 - 주식투자 중 80% 수준을 “3대 그룹주(삼성그룹, 범현대그룹, 법 LG그룹)”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나머지 20% 수준을 금융주 및 전략종목군(리딩기업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투자
5) 신한 BNPP Tops Value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 주식
	투자목적	저PER, 저PBR, 고배당의 특징을 갖는 기업가치가 우량하고 저평가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가치의 증가를 목적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종목 사이즈 보다는 개별기업의 저평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지수 전망을 배제한 종목 선택에 집중한 투자전략 추구 - 기업 사이클상 최악의 국면에서 투자하는 역발상 투자전략 - 외부 요인에 상관없이 철저히 투자원칙에 따른 투자전략
6) 신한 BNPP 좋은아침 희망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 주식
	투자목적	업종대표주, 성장성 및 수익성이 높은 대형주 등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가를 목적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업종대표주 등 대형주 위주 투자 - 가치에 근거한 투자철학: 가치주와 성장주의 균형적 투자 - Active Stock Picking + Passive Asset Allocation
7)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 주식
	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제공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대형주(Core 전략) 및 중소형주(Satellite 전략)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며, 30개 내외의 핵심 소수 종목에 투자하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추구할 계획
8) 신한 BNPP	주요투자대상	국내 주식

좋은아침 펀더멘탈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투자목적	주로 국내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투자신탁으로서 펀더멘탈 가치에 근거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 운용하여 장기적인 자본 증식 제공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매출액, 현금흐름, 자기자본, 배당 등 펀더멘탈(내재가치)를 기초로 산정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주가지수인 펀더멘탈 인덱스의 움직임에 연동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
9)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	주요투자대상	중국 관련 주식
	투자목적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 및 중국주식이 거래되는 여러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회사 또는 주요 수익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 - 대부분 홍콩 상장 중국주식에 투자하지만, 뉴욕, 상하이 및 심천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중국 관련 주식에도 일부 투자 - 펀더멘탈 리서치에 기반하여 적절한 가격을 내재한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 높은 투명성과 향후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면서 저평가된 대형주 및 중, 소형주에 집중 투자 -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Asia Limited에 위탁운용 - 펀드 내에서 부분 환헤지를 실시(해외주식의 미국 달러화 환산 조정가액 기준 80% 수준 추구)
10)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오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주요투자대상	중국 관련 주식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Value 전략'에 근거하여 저평가된 중국 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중국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쫓는 일반적인 중국 펀드와 차별화된 'Value 전략'을 통해 '저평가'된 중국 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 'Value 전략'이란 중국 시장 내 거래소의 분리에 따른 동일 기업 주식 간의 가격차이를 활용하는 '상대가치(Relative Value) 전략'과 기업의 내재가치와 현재 주가 간의 가격 차이를 활용하는 '절대가치(Absolute Value) 전략'을 활용하여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 모투자신탁의 중국 관련 주식 운용은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Asia Limited에 위탁함 - 펀드 내에서 부분 환헤지를 실시(해외 주식의 미국 달러화 환산 평가액 기준 80% 수준 추구)
11) 신한 BNPP 봉쥬르 동남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주요투자대상	동남아시아 관련 주식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식등에 투자 - 모투자신탁의 동남아시아 관련 주식 운용은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Asia Limited에 위탁함 -펀드 내에서 부분 환헤지를 실시(해외 주식의 미국 달러화 환산 평가액 기준 80% 수준 추구)
12) 신한 BNPP 봉쥬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주요투자대상	브라질 관련 주식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관련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브라질 관련 주식 등에 투자 - 모투자신탁의 브라질 관련 주식 운용은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Brasil Ltda에 위탁운용 -펀드 내에서 부분 환헤지를 실시(해외 주식의 미국 달러화 환산 평가액 기준 80% 수준 추구)
13) 신한 BNPP 봉쥬르	주요투자대상	러시아 관련 주식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러시아 관련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

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자하여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러시아 관련 주식 등에 투자 - 모투자신탁의 러시아 관련 주식 운용은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에 위탁함 - 펀드내에서 부분 환혜지를 실시(해외 주식의 미국 달러화 환산 평가액 기준 80% 수준 추구)
	14) 신한 BNPP 봉쥬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H) [주식]	주요투자대상
14) 신한 BNPP 봉쥬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H) [주식]	투자목적	인도 관련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인도 관련 주식등에 투자하며, 나머지 자산은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 추구 - 모투자신탁의 러시아 관련 주식 운용은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Asia Limited 에 위탁함 - 펀드 내에서 부분 환혜지를 실시(해외 주식의 미국 달러화 환산 평가액 기준 80% 수준 추구)
15)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 투자신탁 (H)[주식]	주요투자대상	미국 관련 주식
	투자목적	미국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S&P500 구성종목과 유동성과 규모 면에서 비교 가능한 종목에 투자 - 계량모델에 의한 객관적 리서치를 기반으로 개별종목을 선정 - 모투자신탁의 미국 관련 주식 운용은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에 위탁함 - 펀드 내에서 부분 환혜지를 실시(해외 주식 평가금액의 80% 수준 추구)
16) 신한 BNPP 봉쥬르 유럽배당 증권 투자신탁 제1 호[주식]	주요투자대상	유럽 관련 주식
	투자목적	유럽 관련 주식 등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비교적 배당수익률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EU멤버국가 및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40% 이하를 국내 채권 등에 투자 - 유럽 관련 주식 운용은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Netherlands NV에 위탁함 - 펀드 내에서 부분 환혜지를 실시(주요 통화(유로화 및 영국 파운드화 등)로 표시되는 해외 주식의 평가금액의 80% 수준 추구)
17) 신한 BNPP Tops 일본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 식]	주요투자대상	일본 관련 주식
	투자목적	일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펀더멘탈 가치에 근거한 운용방식으로 일본의 대표기업 지수인 TOPIX 100 대비 초과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일본 주식에 투자하며, 매출액, 경상이익 등 개별기업 재무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채권 및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 - 펀드 내에서 부분 환혜지를 실시(해외 주식 평가금액의 90% 수준 추구)
18) 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증권	투자대상	채권 및 농산물 지수 관련 장내외파생상품
	투자목적	농산물 지수 관련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제공

<p>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혹은 외화표시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동시에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S&P Goldman Sachs Agriculture Livestock Excess Return Index, Dow Jones UBS Agriculture Sub-index 및 기타 농산물지수 또는 이러한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농산물지수(인헨스 전략 포함) 등의 다양한 농산물지수(가축 포함)의 성과와 연계된 장내 및 장외파생에 투자 - THEAM에 위탁운용
<p>19) 신한 BNPP 커머티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p>	<p>주요투자대상</p>	<p>채권 및 금속/귀금속, 에너지 및 농산물 관련 장내외파생상품</p>
	<p>투자목적</p>	<p>금속/귀금속, 에너지 및 농산물과 관련된 장내외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운용전략: BM전략(Commodity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 - 초과수익전략: 포워드 곡선에 따른 전략, 모멘텀 투자전략 등 - 환율변동위험 노출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추구
<p>20) 신한 BNPP 포커스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p>	<p>주요투자대상</p>	<p>해외 주식</p>
	<p>투자목적</p>	<p>투자대상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추구</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신흥시장에 소재한 원자재(Commodity) 관련 주식등에 투자하며, 나머지 자산은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 추구 - 모투자신탁의 신흥시장 원자재 관련 주식 운용은 BNP Paribas Asset Management에 위탁함 - 펀드 내에서 부분 환혜지를 실시(해외 주식의 미국 달러화 환산 평가액 기준 80% 수준 추구)
<p>21) 신한 BNPP 에너지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p>	<p>주요투자대상</p>	<p>채권 및 에너지관련 장내외파생상품</p>
	<p>투자목적</p>	<p>에너지 관련 장내외파생상품에의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운용전략: BM 전략(에너지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 - 초과수익전략: 포워드 곡선에 따른 전략, 모멘텀 투자전략 등 - 환율변동위험 노출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추구
<p>22)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p>	<p>주요투자대상</p>	<p>금광업 관련 주식</p>
	<p>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NYSE Arca Gold Miners Index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NYSE Arca Gold Miners Index를 추종하기 위해 금광업 관련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함과 동시에 금 실물의 거래 없이 통장으로 자유로이 입출금 할 수 있는 골드 बैं킹 상품인 금 관련 파생결합증권인 골드리슈(Gold Riche) 상품에 투자</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SE Arca Gold Miners Index를 추종함과 동시에 금 실물의 거래 없이 통장으로 자유로이 입출금할 수 있는 골드 बैं킹 상품인 신한은행 골드리슈(Gold Riche) 상품에 투자 - 펀드 내에서 부분 환혜지를 실시(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 평가액 기준 80% 수준 추구)
<p>23) 신한 BNPP 탑스 글로벌 리츠</p>	<p>주요투자대상</p>	<p>집합투자증권</p>
	<p>투자목적</p>	<p>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REITs) 등에 주로 투자하여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p>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재간접형]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REITs) 등에 주로 투자 - 부동산 관련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 운용은 Prudential Investment Management, Inc에 위탁함 - 펀드 내에서 부분 환헤지를 실시(주요 외국통화(미국 달러화, 호주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등)로 표시되는 해외집합투자증권등의 평가금액의 80% 수준 추구)
24) 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채권 및 어음등 각각 40% 이하
	투자목적	중국, 인도, 신흥유럽(러시아 포함) 및 중남미국가(브라질 포함)의 기업 등이 발행하는 주식에 주로 투자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차원에서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면서도 상관관계가 낮은 BRICs 시장으로의 분산효과 극대화 - 소비계층의 급부상에 따라 초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금융섹터, 소비재섹터, 기업의 투자성장과 인프라 투자 집중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글로벌 원자재섹터, 자본재섹터, 통신섹터에 투자 -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현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종목 발굴과 국가배분전략으로 BM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 펀드 내에서 부분 환헤지를 실시(해외 주식의 미국 달러화 환산 평가액 기준 80% 수준 추구)

(1)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종류 A-u)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명		보수 (종류 A-u)		
1)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1호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171 %	
		판매회사보수	연 0.300 %	
		신탁업자보수	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0.501 %			
	2)신한 BNPP BEST CHOICE 단기 증권 투자신탁 제4호[채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150 %
			판매회사보수	연 0.300 %
			신탁업자보수	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0.480 %			
	3)신한 BNPP 좋은 아침 희망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670 %
			판매회사보수	연 0.900 %
			신탁업자보수	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1.600 %			
	4)신한 BNPP Tops Value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670 %
			판매회사보수	연 0.900 %
			신탁업자보수	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1.600 %			
	5)신한 BNPP 봉쥬르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 이내	

르 차이나 증권 투 자신탁 제2호[주 식]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780 %
		판매회사보수	연 0.750 %
		신탁업자보수	연 0.05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20 %
		총보수	연 1.600 %
6)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 자신탁(H)[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780 %
		판매회사보수	연 0.85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25 %
총보수	연 1.715 %		
7)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900 %
		판매회사보수	연 0.97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0 %
총보수	연 1.960 %		
8)신한 BNPP 커머 더티 인덱스 플러 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 생형]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650 %
		판매회사보수	연 0.990 %
		신탁업자보수	연 0.05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5 %
총보수	연 1.705 %		
9) 신한 BNPP 봉 쥬르 동남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900 %
		판매회사보수	연 1.00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0 %
총보수	연 1.990 %		
10) 신한 BNPP 골 드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600 %
		판매회사보수	연 0.600 %
		신탁업자보수	연 0.07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20 %
총보수	연 1.290 %		

(2)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종류 A-u2)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명		보수 (종류 A-u2)	
1) 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1호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171 %
		판매회사보수	연 0.330 %
		신탁업자보수	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0.531%		
2)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060 %
		판매회사보수	연 0.080 %

		신탁업자보수	연 0.02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0.160 %
3) 신한 BNPP BEST CHOICE 단기 증권 투자신탁 제4호[채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150 %
		판매회사보수	연 0.330 %
		신탁업자보수	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0.510 %	
4) 신한 BNPP 3대 그룹주 Plus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720 %
		판매회사보수	연 0.920 %
		신탁업자보수	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5%
	총보수	연 1.685 %	
5) 신한 BNPP Tops Value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670 %
		판매회사보수	연 0.820 %
		신탁업자보수	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1.520 %	
6) 신한 BNPP 좋은아침 희망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670 %
		판매회사보수	연 0.820 %
		신탁업자보수	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1.520 %	
7)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750 %
		판매회사보수	연 0.600 %
		신탁업자보수	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1.380%	
8) 신한BNPP 좋은 아침 펀더멘탈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400 %
		판매회사보수	연 0.420 %
		신탁업자보수	연 0.03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0.850 %	
9)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780 %
		판매회사보수	연 0.770 %
		신탁업자보수	연 0.05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20 %
	총보수	연 1.620 %	
10)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오피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900 %

튜니디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판매회사보수	연 0.94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0 %
		총보수	연 1.930 %
11) 신한 BNPP 봉쥬르 동남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900 %
		판매회사보수	연 0.99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0 %
	총보수	연 1.980 %	
12) 신한 BNPP 봉쥬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900 %
		판매회사보수	연 0.99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0 %
	총보수	연 1.980 %	
13) 신한 BNPP 봉쥬르 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900 %
		판매회사보수	연 0.99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0 %
	총보수	연 1.980 %	
14) 신한 BNPP 봉쥬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900 %
		판매회사보수	연 0.99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0 %
	총보수	연 1.980 %	
15)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780 %
		판매회사보수	연 0.77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25 %
	총보수	연 1.635 %	
16) 신한 BNPP 봉쥬르 유럽배당 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720 %
		판매회사보수	연 0.77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25 %
	총보수	연 1.575 %	
17) 신한 BNPP Tops 일본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540 %
		판매회사보수	연 0.42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보수	연 1.020 %	
18) 신한 BNPP 포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커스 농산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채권-파생형]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8000 %
		판매회사보수	연 0.8200 %
		신탁업자보수	연 0.037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50 %
		총보수	연 1.6725%
19) 신한 BNPP 커머더티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투자신탁보수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650 %
		판매회사보수	연 0.935 %
		신탁업자보수	연 0.05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5 %
총보수	연 1.650 %		
20) 신한 BNPP 포커스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투자신탁보수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900 %
		판매회사보수	연 0.99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30 %
총보수	연 1.980 %		
21) 신한 BNPP 에너지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투자신탁보수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650 %
		판매회사보수	연 0.935 %
		신탁업자보수	연 0.05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5 %
총보수	연 1.650%		
22)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투자신탁보수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600 %
		판매회사보수	연 0.520 %
		신탁업자보수	연 0.07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20 %
총보수	연 1.210 %		
23) 신한 BNPP 탑스 글로벌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재간접형]	투자신탁보수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98% 이내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900 %
		판매회사보수	연 0.920 %
		신탁업자보수	연 0.060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25 %
총보수	연 1.905 %		

라.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자투자신탁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메리카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투자신탁재산의 70% 이하

신한 BNPP 재형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	-----------------

주1) 상기 모두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다른 모두자신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신한BNPP 봉쥬르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해외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 관련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두자신탁임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매출의 상당한 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주식 등(이하 “미국 관련 주식 등”이라 함)에 투자하고 40% 이하를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미국 관련 주식 등은 미국 달러화 등으로 거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이 모두자신탁에서는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따라 환헤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투자신탁별로 환헤지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자산 유형	투자비율 (%) (투자신탁재산 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집합투자증권	100% 이하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2. 통화관련파생상품		환율위험을 헤지 하기 위한,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거한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3. 채권	5% 이하	환율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통화관련파생상품 거래에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채권. 단,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한함(이하 “채권”이라 한다). 채권에의 투자는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포지션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위탁증거금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포지션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4.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30% 이하)	법 시행령 제3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및 상기 각 운용방법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및 모투자신탁의 비중 조절시 설정 및 환매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인 10% 이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 ~ 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자산 유형	투자비율 (투자신탁재 산총액 대비)	주요 내용
1. 주식	60%이상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미국에 설립된 회사 또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주식 등에 한한다]

2.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사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 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 증권 총액의 100% 이하.
6. 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2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자산총액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95% 이상이 법 제 42 조에 따라 업무위탁의 방법으로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8.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 총액의 50% 이하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0.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이라 한다)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11.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법 시행령 제 345 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이 운용방법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 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다음 각 의 10%를 초과하여 <u>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u> 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의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한도초과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u>파생상품 투자의</u>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u>동일종목 투자,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u> 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계열회사 지분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	이 투자신탁재산을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재산의 10% 이하를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 비중은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부득이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3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고 미국 달러화 등의 통화로 거래되는 미국 관련 주식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 상품유형별, 펀드별 운용자산 만기분포 분석
- 특정업종 및 종목의 집중편입여부 점검 및 통제
- 보유 종목의 시장 유동성 모니터링 등

(4)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로 거래되는 미국 관련 주식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유동성과 헤지비용을 고려하여 모투자신탁의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해외 주식 평가금액의 80% 수준을 한국 원화 대비 환헤지를 실행코자 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해외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 가치 상승)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원화대비 해당 외화 가치 상승)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환헤지의 비용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환헤지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계약환율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
환헤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 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 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5)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S&P 500(USD)) x 95%) + (골드리 x 5%)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

므로 해당 지역 주식시장 성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를 비교지수의 95% 비중으로 적용하고,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콜금리를 비교지수의 5% 비중으로 적용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비교지수 선정 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펀드의 비교지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 되었습니다.

- 설정일 이후 ~ 2009년 5월 3일 : (S&P 500(USD)) x 90% + (콜금리 x 10%)
- 2009년 5월 4일 이후 : (S&P 500(USD)) x 95% + (콜금리 x 5%)

*** S&P 500**

미국의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Poor's)가 기업규모·유동성·산업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보통주 500종목을 대상으로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입니다.

*** 콜금리**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때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 합니다.

동 펀드의 비교지수는 미국달러화(USD)에 대하여 100%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동 펀드는 미국달러화에 대하여 80% 수준의 목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기에, 비교지수는 미국달러화에 대하여 80%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동 펀드의 환헤지 전략은 항상 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외환시장의 변동에 대응하여 평균적으로 80% 수준의 환헤지 실행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미국달러화에 대하여 80%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비교지수로 적용하더라도 동 펀드의 환헤지 실행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미국달러화에 대하여 100% 환헤지를 가정한 인덱스를 펀드의 비교지수로 설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교지수의 성과와 펀드의 실제 성과의 차이에는 비교지수의 환헤지 비율과 실제 환헤지 비율의 차이로 인한 성과 차이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주된 투자대상인 미국 관련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주된 투자대상인 미국 관련 주식 등은 외국통화로 거래되기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p>(1)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관련 주식등에 투자합니다.</p> <p>(2)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로 거래되는 미국 관련 주식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p> <p>(3)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인 BNP Paribas Asset Management가 담당합니다.</p> <p>(4) 이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며, 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따라 환헤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p>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주식 등 가격변동위험</p>	<p>투자대상 주식 및 채권 등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은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미국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시장 위험</p>	<p>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p>
<p>환율변동에 따른 위험</p>	<p>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손실위험을 축소하고자 이 투자신탁에서는 모두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 달러화 대비 원화의 변동에 대해 부분환헤지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모두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자산의 경우 모두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 달러화 대비 해당자산의 표시통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미국 달러화와 해당 통화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들에 의해 부분환헤지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헤지하는 금액: 이 금액은 투자대상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 자산배분의 변화,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이나 부분 환매 또는 외국통화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 등으로 인해 매일 변할 수 있습니다. 2. 헤지할 통화의 유동성 및 헤지 비용 3. 외환시장의 붕괴 또는 일상적인 통제수준을 넘는 외환시장의 충격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나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곤란한 경우 4. 관련 법령 제한 또는 규제 변화 등 5. 선물환거래 상대방의 부도
<p>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p>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파생상품 투자위험</p>	<p>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미국 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평가된 주식들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유동성도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에 응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러한 낮은 유동성은 단기간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과 달리 시차에 의한 개장 및 폐장시각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업무처리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고 일정기간의 환매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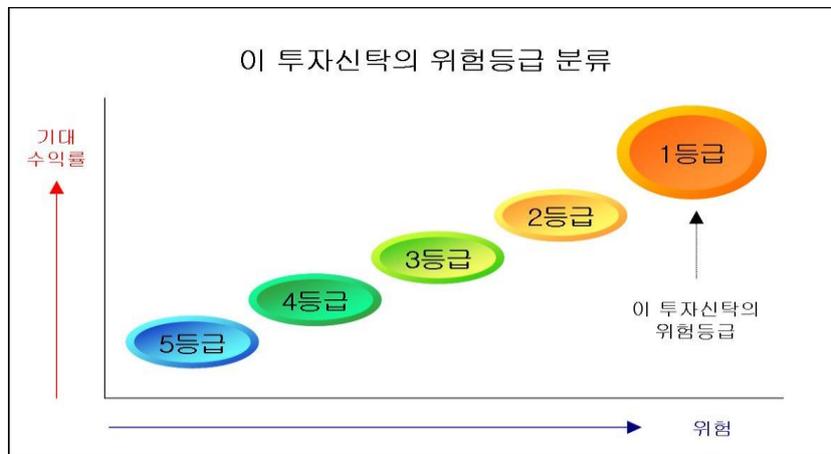
	<p>경우</p> <p>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p>
<p>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p>	<p>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각 위험 별로 평가한 후 총괄하여 원본손실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 1등급, 높은 경우 2등급, 중간수준인 경우 3등급, 낮은 경우 4등급, 아주 낮은 경우 5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미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5개의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과 관련된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 원본 전체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 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 신한 비엔피 파riba 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예시 >

위험등급	대상 펀드
1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등에 최소 60% 이상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미만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자산의 9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등에 최대 50% 이상까지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이상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자산의 9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등에 최대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자산의 9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으며, 국공채, A-이상 회사채/금융채/특수채 등에 총자산의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 유동성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국공채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MMF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가. 매입

(1)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1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A2	가입제한은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되는 날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i	가입제한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가입자격>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 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종류 직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종류 A-u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A-u2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v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3)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B.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D+2	D+3
자금납입일 (오후 5시 이전)		기준가 적용일	↑
----- 자금납입일 (오후 5시 경과 후)			기준가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C.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할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펀드 내 전환 (보수인하 종류 수익증권 간의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방법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하 "최초매수일"이라 한다)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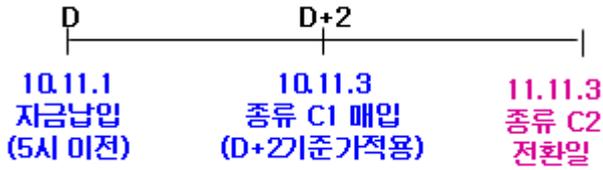
1.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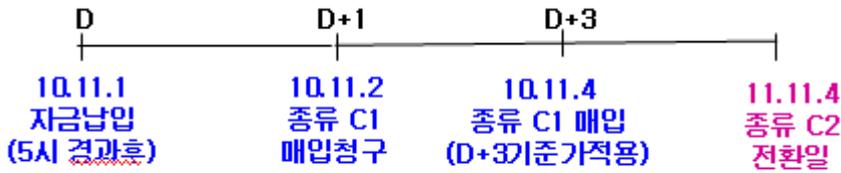
* 다만, 2011년 01월 17일 기준 종류 C1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하여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이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방법에 따라 전환됩니다.

(전환의 예시) 수익자가 **2010년 11월 1일**에 최초로 종류 C1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 해당 전환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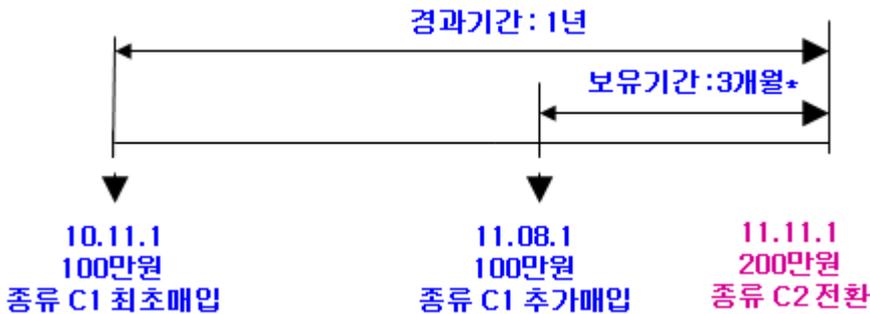
(2) 오후 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추가설정과 관계없이 최초매입일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을 계산합니다.

예1)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 매입일 이후 해당 전환시점 전 추가설정이 일어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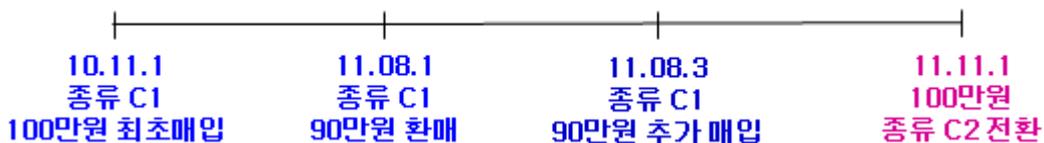
→ 추가 설정일과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경과기간 계산



* 11.08.1에 추가로 투자한 100만원은 경과기간이 3개월이지만, 해당 수익증권의 최초 매입일을 기준으로 전환일을 산정하기 때문에 최초매입분과 함께 전환

예2) 투자기간 중 수익자의 청구로 인하여 일부(분할)환매가 발생한 경우

→ 중도 환매와 관계없이 최초 매입일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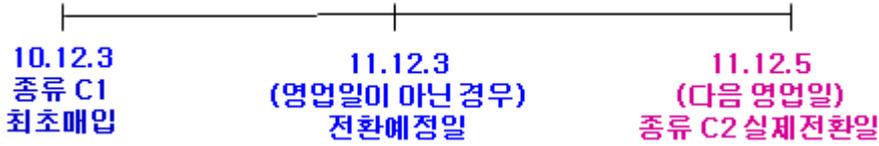


실제 전환기준 기간을 채운 금액은 10만원이지만, 추가 매입분도 최초매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전환

< 예외 >

예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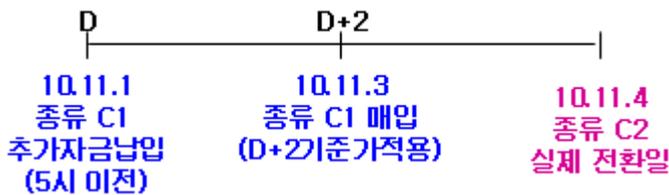
해당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 예정전환일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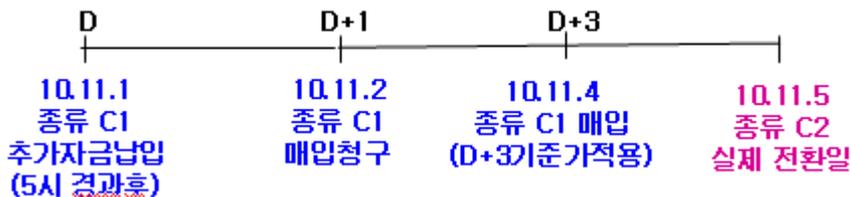
예외 2.

수익증권의 매입요청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매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매입일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1) 오후 5시 이전에 해당계좌에 추가자금을 납입하여, 예정전환일이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11월 1일과 11월 3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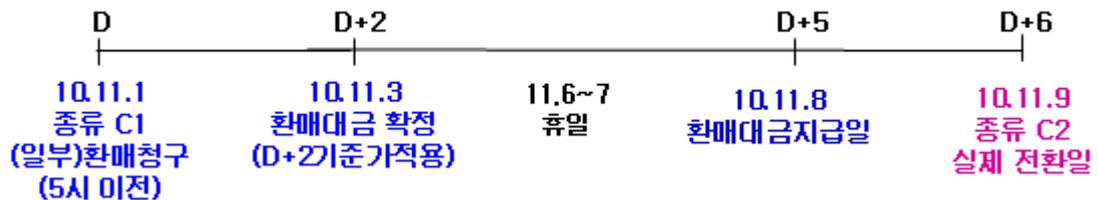
예2) 오후 5시 경과후에 해당계좌에 추가자금을 납입하여, 예정전환일이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11월 1일과 11월 4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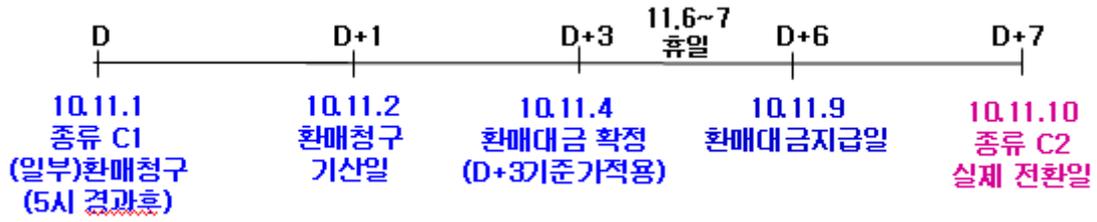
예외 3.

수익자의 (일부)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일부)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1) 오후 5시 이전에 (일부)환매를 청구하여, 예정전환일이 (일부)환매절차가 진행중인 11월 1일과 11월 8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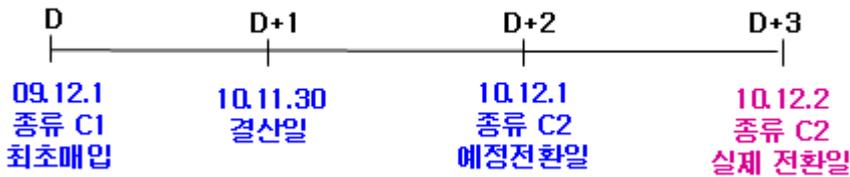


예2) 오후 5시 경과후에 (일부)환매를 청구하여, 예정전환일이 (일부)환매절차가 진행중인 11월 1일과 11월 9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4.

전환일 전일이 결산일(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인 경우, 예정 전환일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증권 전환시 기준가격 등

수익증권 전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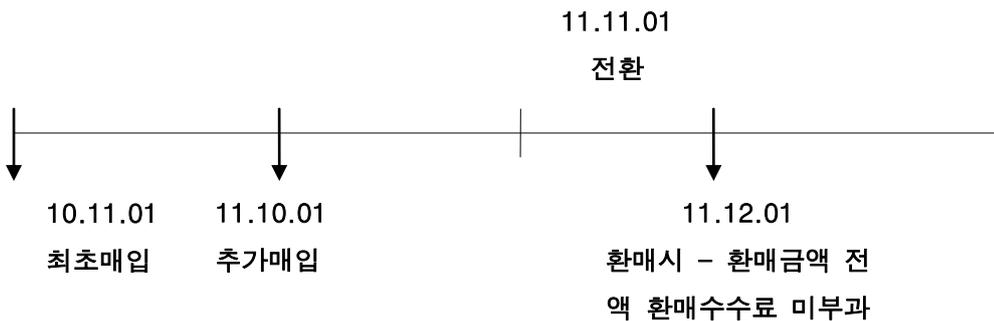
* 판매회사는 위 전환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 내 전환(보수인하 종류 수익증권 간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매수수료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수익증권 환매 시 환매수수료

- 1. 수익증권의 자동 전환을 위해 환매 되는 경우 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환매수수료 면제
- 2. 수익증권의 전환 후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
 - 2-1. 전환 후 추가 납입분이 없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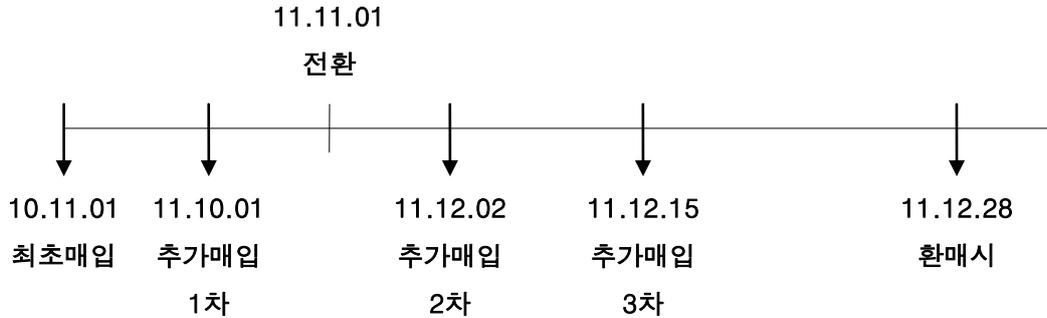
(예시)



*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이 '90일 미만 투자'이므로, 11.10.01에 추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11.12.01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환매수수료 부과 대상이지만 환매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2. 전환 후 추가 납입분이 있는 경우 : 전환 후 추가 납입 분에 대해서만 기존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적용

(예시)



11.12.28 환매시, 전환전 시점에 설정된 매입분(10.11.01 최초매입분 및 11.10.01 추가매입분)을 초과하여 환매하는 경우, 전환 후 매입분(11.12.02 및 11.12.15)에 대하여서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매수수료 부과

다.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 ① 각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에서 그 외 종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② 수익증권의 전환 청구는 최초 매수일로부터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각 종류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나. 펀드 내 전환 (보수인하 종류 수익증권 간의 전환)에 따라 전환된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종류 C1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집합투자규약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청구 시, 전환 청구 수익증권의 집합투자규약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이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 보다 낮을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선취판매수수료율의 차이만큼을 전환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차이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⑤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2.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전환 관련 세부사항은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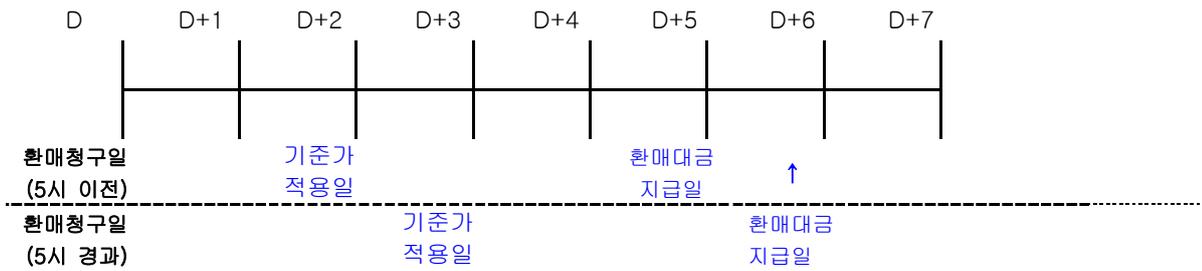
라.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직접 환매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A.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B.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C.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두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다음과 같이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된 수수료는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1. **종류 A1 수익증권, 종류 A2 수익증권: 없음**
2. **종류 A-e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10%**
3. **종류 A-u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4.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v 수익증권:**
 - A.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B.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 [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4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그밖에 ①내지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마. 펀드 간 전환 (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간의 전환)

(1)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전환형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간의 전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횡수제한은 없으며, 전환 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1. 종류 A-u : 신한 BNPP 엄브렐러 클래스 펀드

	펀드명
1	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 1 호
2	신한 BNPP BEST CHOICE 단기 증권 투자신탁 제 4 호[채권]
3	신한 BNPP 좋은아침 희망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4	신한 BNPP Tops Value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5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 2 호[주식]
6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7	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8	신한 BNPP 커머더티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채권-파생형]
9	신한 BNPP 봉쥬르 동남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10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	------------------------------

상기 집합투자증권 중 종류 A-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종류 A-u2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

	펀드명		펀드명
1	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1호	13	신한 BNPP 봉쥬르 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
2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14	신한 BNPP 봉쥬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
3	신한 BNPP BEST CHOICE 단기 증권 투자신탁 제4호[채권]	15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4	신한 BNPP 3대그룹주 Plus 증권 자투자신탁 제 1호[주식]	16	신한 BNPP 봉쥬르 유럽배당 증권 투자신탁 제1 호[주식]
5	신한 BNPP Tops Value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17	신한 BNPP Tops 일본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6	신한 BNPP 좋은아침 희망 증권 자투자신탁 제 1호[주식]	18	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증권 자투자신탁 제1 호[채권-파생형]
7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9	신한 BNPP 커머더티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 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8	신한 BNPP 좋은아침 펀더멘탈 인덱스 증권 자 투자신탁 제1호[주식]	20	신한 BNPP 포커스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 신탁(H)[주식]
9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2 호[주식]	21	신한 BNPP 에너지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 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10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오퍼튜니티 증권 자 투자신탁(H)[주식]	22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11	신한 BNPP 봉쥬르 동남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23	신한 BNPP 탑스 글로벌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재간접형]
12	신한 BNPP 봉쥬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		

상기 집합투자증권 중 종류 A-u2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처리 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① 신한 BNPP BEST 개인용 MMF 제1호,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에서 다른 투자신탁 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 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D)	제2영업일(D+1)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			판매회사

전환청구시		일 및 전환일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 일 및 전환일		

② 신한 BNPP BEST CHOICE 단기 증권 투자신탁 제4호[채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D)	제2영업일(D+1)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 일 및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 일 및 전환일	

③ 신한 BNPP 3대그룹주 Plus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신한 BNPP Tops Value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신한 BNPP 좋은아침 희망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신한 BNPP 핵심공략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신한 BNPP 좋은아침 펀더멘탈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D)	제2영업일(D+1)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영업일 구분
15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15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④ 신한 BNPP Tops 일본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H)[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D)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제6영업일(D+5)	제7영업일(D+6)	영업일 구분
15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5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⑤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3영업일 (D+2)	제4영업일 (D+3)	제5영업일 (D+4)	제6영업일 (D+5)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⑥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오퍼튜니티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3영업일 (D+2)	제4영업일 (D+3)	제5영업일 (D+4)	제6영업일 (D+5)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⑦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3영업일 (D+2)	제4영업일 (D+3)	제6영업일 (D+5)	제7영업일 (D+6)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⑧ 신한 BNPP 탑스 글로벌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3영업일 (D+2)	제4영업일 (D+3)	제8영업일 (D+7)	제9영업일 (D+8)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⑨ 신한 BNPP 봉쥬르 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D)	제3영업일(D+2)	제4영업일(D+3)	제8영업일(D+7)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⑩ 신한 BNPP 봉쥬르 유럽배당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4영업일 (D+3)	제5영업일 (D+4)	제6영업일 (D+5)	제7영업일 (D+6)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⑪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 신한 BNPP 봉쥬르 동남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신한 BNPP 봉쥬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 (H)[주식], 신한 BNPP 봉쥬르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4영업일 (D+3)	제5영업일 (D+4)	제8영업일 (D+7)	제9영업일 (D+8)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⑫ 신한 BNPP 포커스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4영업일 (D+3)	제5영업일 (D+4)	제9영업일 (D+8)	제10영업일 (D+9)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⑬ 신한 BNPP 커머더티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 신한 BNPP 에너지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전환	제1영업일 (D)	제5영업일 (D+4)	제6영업일 (D+5)	제8영업일 (D+7)	제9영업일 (D+8)	영업일 구분
17시 이전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판매회사 영업일
17시 경과 후 전환청 구시	전환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일	

(3)전환시 유의사항

- 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전환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판매회사는 선취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 전환시 및 전환후 수익자가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수익자는 투자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신청할 수 있으나, 판매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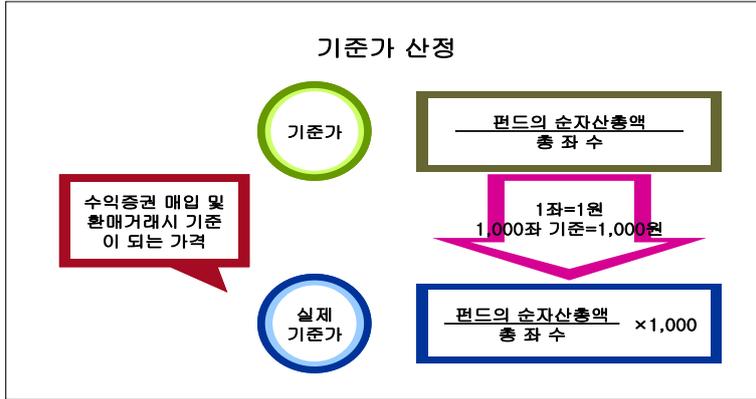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도 이자수익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주1)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시가(공정가액) 평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 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A1	2007.10.16	제한없음
종류 A2	설정전	신규 또는 추가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종류 C1	2011.03.08	제한없음
종류 C2	설정전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3	설정전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4	설정전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5	설정전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되는 날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종류 C-i	2007.11.28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50 억원 이상 매입하거나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종류 직판	2011.01.3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종류 A-u	2010.08.11	제한없음
종류 A-u2	2011.06.30	제한없음
종류 A-e	설정전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e	설정전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종류 C-v	설정전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 위 종류 수익증권들은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 판매회사를 통해 전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1.매입, 환매 및 전환기준 다. 종류 A-u 또는 A-u2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지급시기	-	환매시
종류 A1	납입금액의 1.00%	-
종류 A2	납입금액의 0.50%	-
종류 A-e	주1) 참고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10%
종류 A-u	납입금액의 0.90% 이내 ¹⁾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종류 C1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단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해 환매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징구하지 않음)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5	-	
종류 C-i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종류 직판	-	
종류 C-e	-	
종류 C-v	-	
종류 A-u2	납입금액의 0.98% 이내 ¹⁾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1) 납입금액의 0.9%(종류 A-u), 0.98%(종류 A-u2)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종류 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기간 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또한 아래 기간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를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종류 A-e 수익증권]

기간	선취판매수수료
설정일 ~ 2013.12.31	납입금액의 0.6% 이내
2014.01.01 이후	납입금액의 0.5% 이내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 자보수	일반사무관 리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총보수	증권거 래비용
종류 A1	0.7800	0.7500	0.0600	0.0250	0.0074	1.6224	1.6613	0.0465
종류 A2	0.7800	0.7000	0.0600	0.0250	-	1.6150	1.6150	-
종류 A-e	0.7800	(주7)참고	0.0600	0.0250	-	1.3150	1.3150	-
종류 C1	0.7800	1.5000	0.0600	0.0250	-	2.3650	2.3650	-
종류 C2	0.7800	1.4000	0.0600	0.0250	-	2.2650	2.2650	-
종류 C3	0.7800	1.3000	0.0600	0.0250	-	2.1650	2.1650	-
종류 C4	0.7800	1.2000	0.0600	0.0250	-	2.0650	2.0650	-
종류 C5	0.7800	1.1000	0.0600	0.0250	-	1.9650	1.9650	-
종류 C-i	0.7800	0.1000	0.0600	0.0250	0.0079	0.9729	1.0125	0.0499
종류 직판	0.7800	-	0.0600	0.0250	0.0071	0.8721	0.9100	0.0395
종류 C-e	0.7800	(주 7)참고	0.0600	0.0250	-	1.4650	1.4650	-
종류 C-v	0.7800	0.0200	0.0600	0.0250	-	0.8850	0.8850	-
종류 A-u	0.7800	0.8500	0.0600	0.0250	0.0071	1.7221	1.7614	0.0486
종류 A-u2	0.7800	0.7700	0.0600	0.0250	0.0029	1.6379	1.6754	0.0390
지급시기	매 3 개월 후급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 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 3)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2.26 ~ 2013.02.25]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단, 2013.08.28 까지 발행분에 한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5)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7)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판매보수는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합니다.

기간	판매회사보수(%)	
	종류 A-e	종류 C-e
설정일~ 2013.12.31	연0.450%	연0.600%
2014.01.01 이후	연0.375%	연0.500%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1	267	620	997	2,053
종류 A2	214	561	932	1,972
종류 A-u	267	642	1,041	2,156
종류 A-u2	266	623	1,003	2,067
종류 A-e	135	421	729	1,601
종류 C1	242	728	1,197	2,463
종류 C-e	150	469	810	1,772
종류 C-i	104	325	564	1,249
종류 직판	93	292	508	1,128
종류 C-v	91	284	494	1,098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단, 선·후취 판매수수료는 제외). **종류 C1와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의 경우는,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보수 및 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수익률은 5%,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자투자신탁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 반영을 위해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3)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상당히 낮아질 경우 해외 자산 매매 및 보관 등을 위한 기타 비용(해외보관대리인 비용, 해외거래예탁비용 등)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신탁보수 및 수수료 현황][직전 회계연도 기준, 단위: 연/%)]

다른 자투자신탁	구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기타비용	합계
봉쥬르차이나메리카자1호[주식](종 A1)[2011.03.22~2012.03.21]		0.9000	0.8000	0.0600	0.0250	0.0025	1.7875
봉쥬르차이나메리카자1호[주식](종 C-e)[2011.03.22~2012.03.21]		0.9000	0.8550	0.0600	0.0250	0.0011	1.8411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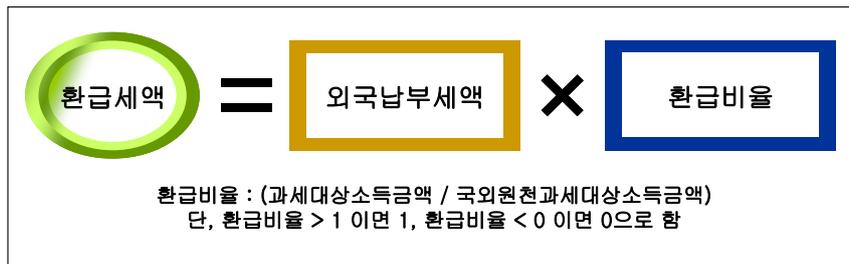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방안 시행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에서 명시한 기간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 기(2012.02.26 ~ 2013.02.25)	안진회계법인	적정
제 5 기(2011.02.26 ~ 2012.02.25)	안진회계법인	적정
제 4 기(2010.02.26 ~ 2011.02.25)	안진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통합 대차대조표			
항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13.02.25)	(2012.02.25)	(2011.02.25)
운용자산	10,348,313,838	26,327,375,237	25,351,241,081
증권	10,176,745,439	25,140,855,184	25,101,811,55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71,568,399	1,186,520,053	249,429,52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68,076,556	199,081,478	189,360,704
자산총계	10,616,390,394	26,526,456,715	25,540,601,78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65,838,499	377,383,064	1,387,240,489
부채총계	265,838,499	377,383,064	1,387,240,489
원본	9,938,342,830	24,688,627,809	23,984,243,217
수익조정금	34,932,369	23,840,496	1,708,844,243
이익잉여금	377,276,696	1,436,605,346	-1,539,726,164
자본총계	10,350,551,895	26,149,073,651	24,153,361,296

통합 손익계산서			
항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12.02.27-2013.02.25)	(2011.02.27-2012.02.25)	(2010.02.27-2011.02.25)
운용수익	1,328,703,648	1,766,120,296	1,335,118,889
이자수익	31,491,717	29,392,483	5,906,13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297,211,931	1,736,727,813	1,329,212,759
기타수익	201,293	25,963	0
운용비용	191,025,676	314,741,323	89,404,373
관련회사 보수	191,025,676	314,741,323	89,404,37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4,667,349	7,479,577	3,076,472
당기순이익	1,133,211,916	1,443,925,359	1,242,638,044
매매회전율	0	0	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은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 3) "통합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5)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최근회계연도 동안의 매매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BNPP봉쥬르미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6기:2012.02.24~2013.02.25) : 118.6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 자지 분 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 수)	금액
				좌수 (출 자지 분 수)	금액	좌수 (출 자지 분 수)	금액		
종류 A1	2012.02.26~2013.02.25	120	120	41	42	89	89	72	75
	2011.02.26 - 2012.02.25	134	134	56	56	70	70	120	126
	2010.02.26 - 2011.02.25	60	48	101	100	27	24	134	134
종류 C-i	2012.02.26 - 2013.02.25	22	22	3	2	1	1	23	24
	2011.02.26 - 2012.02.25	4	4	25	26	7	8	22	23
	2010.02.26 - 2011.02.25	8	6	0	0	4	3	4	4
종류 A-u	2012.02.26 - 2013.02.25	5	5	3	3	4	4	4	4
	2011.02.26 - 2012.02.25	2	2	5	5	2	2	5	5
	2010.02.26 - 2011.02.25	0	0	2	3	0	0	2	2
종류 직판	2012.02.26 - 2013.02.25	101	101	6	6	106	113	0	0
	2011.02.26 - 2012.02.25	100	100	1	1	0	0	101	107
	2010.02.26 - 2011.02.25	0	0	100	100	0	0	100	10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2013.02.28. 현재/단위: %]

구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5년차	설정일 이후
종류 A1	2007.02.26	3.24	4.00	11.09	1.97	1.56
종류 A-u	2010.08.11	3.14	3.90	-	-	11.74
종류 A-u2	2011.06.30	2.42	-	-	-	4.02
종류 C-i	2007.11.28	3.91	4.69	11.82	2.65	1.94
비교지수	2007.02.26	10.14	7.05	10.83	2.90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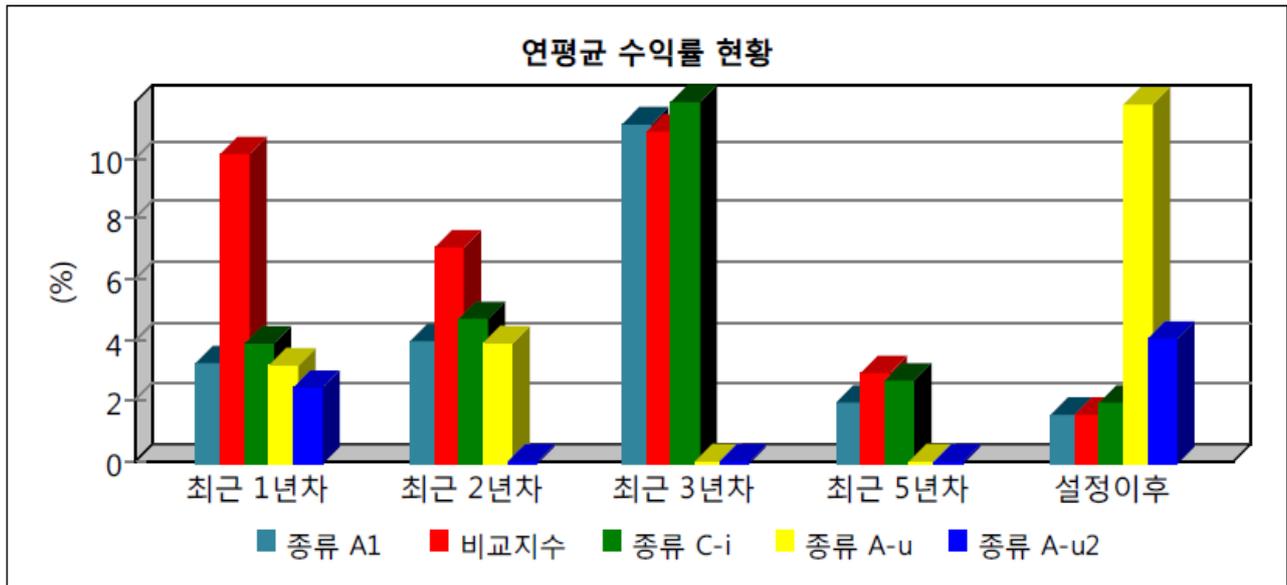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설정일 이후~2009년 5월 3일 : (S&P 500(USD)) x 90% + (골금리 x 10%)

2009년 5월 4일 이후 : (S&P 500(USD)) x 95% + (골금리 x 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2013.02.28. 현재/단위: %]

구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A1	2007.02.26	3.24	8.17	37.15	69.70	10.26
종류 A-u	2010.08.11	3.14	7.95	-	-	-
종류 A-u2	2011.06.30	2.42	-	-	-	-
종류 C-i	2007.11.28	3.91	9.60	39.87	74.19	13.96
비교지수	2007.02.26	10.14	14.61	36.18	94.89	15.35

(주1) 비교지수 :

설정일 이후~2009년 5월 3일 : (S&P 500(USD)) x 90% + (골금리 x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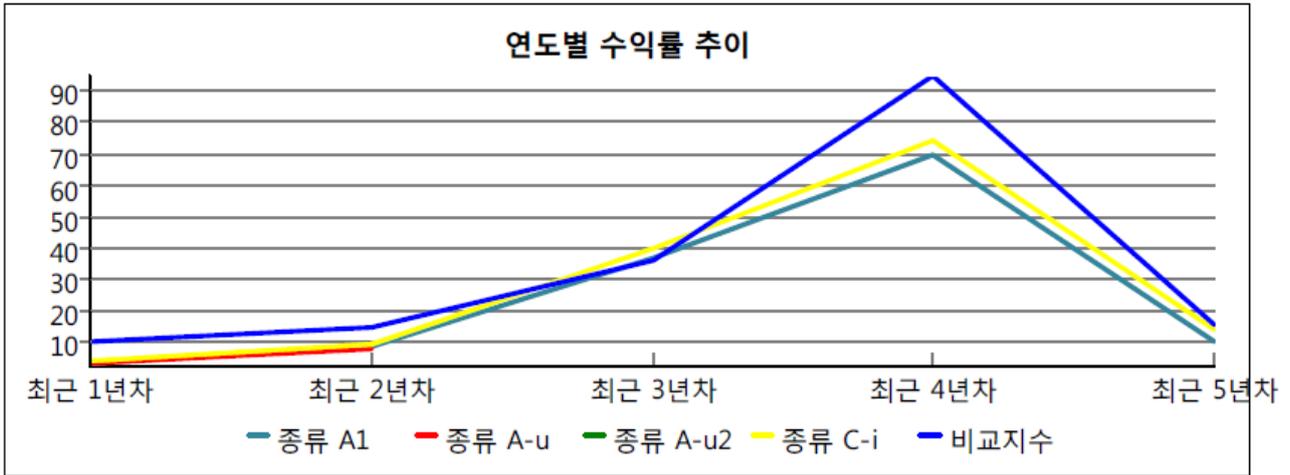
2009년 5월 4일 이후 : (S&P 500(USD)) x 95% + (골금리 x 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단순 누적 수익률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의 변동추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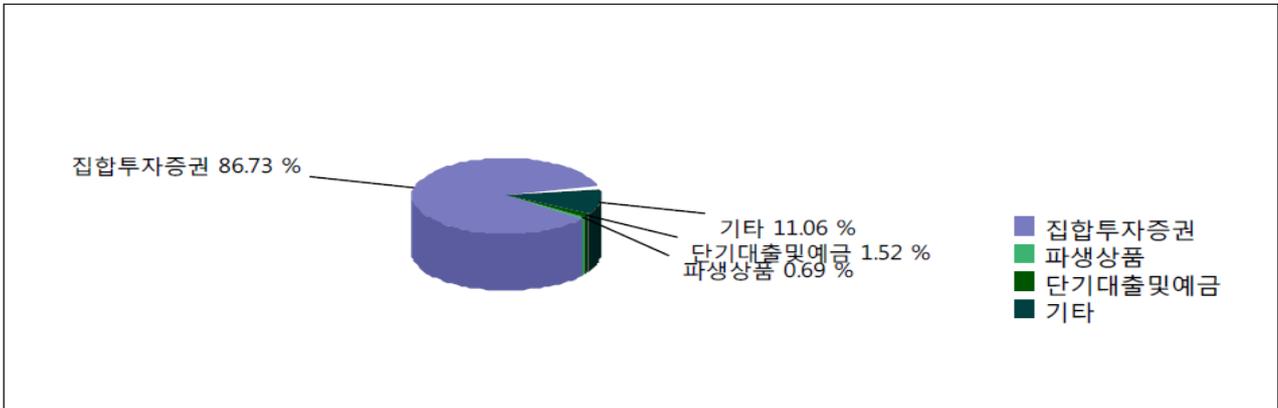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설정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기간	수익률 기재 방식
6개월 미만	기재하지 않습니다.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기간 수익률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 연환산수익률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자투자신탁)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100	0	0	0	0	0	2	13	114
	(0.00)	(0.00)	(0.00)	(87.34)	(0.00)	(0.00)	(0.00)	(0.00)	(0.00)	(1.53)	(11.13)	(100.00)
USD	0	0	0	0	0	1	0	0	0	0	0	1
	(0.00)	(0.00)	(0.00)	(0.00)	(0.00)	(99.60)	(0.00)	(0.00)	(0.00)	(0.40)	(0.00)	(100.00)
합계	0	0	0	100	0	1	0	0	0	2	13	115
	(0.00)	(0.00)	(0.00)	(86.73)	(0.00)	(0.69)	(0.00)	(0.00)	(0.00)	(1.52)	(11.0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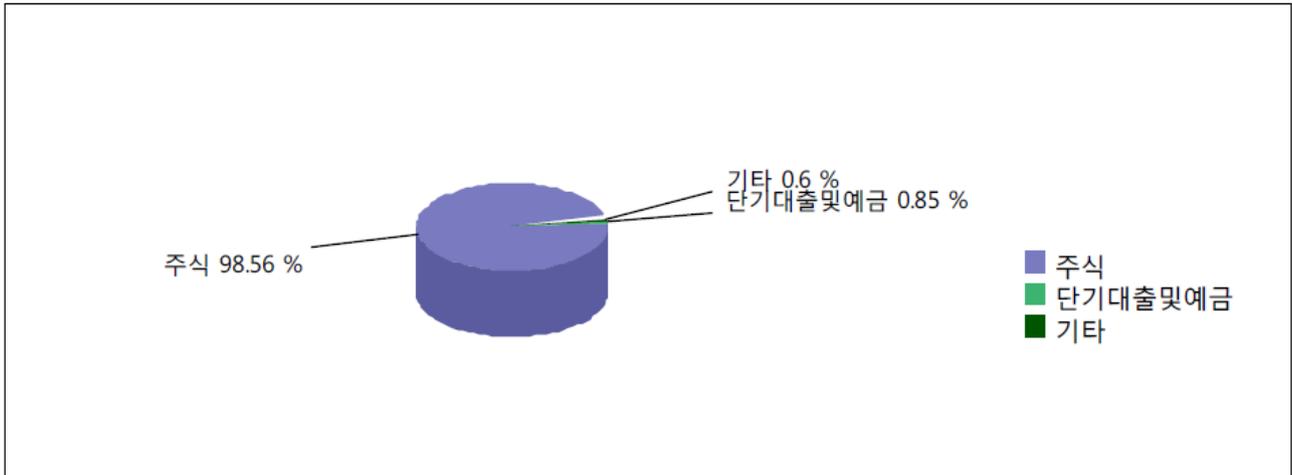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013.02.28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55.01)	1 (44.99)	1 (100.00)
USD	105 (99.88)	0 (0.00)	0 (0.12)	0 (0.00)	105 (100.00)							
합계	105 (98.56)	0 (0.00)	1 (0.85)	1 (0.60)	10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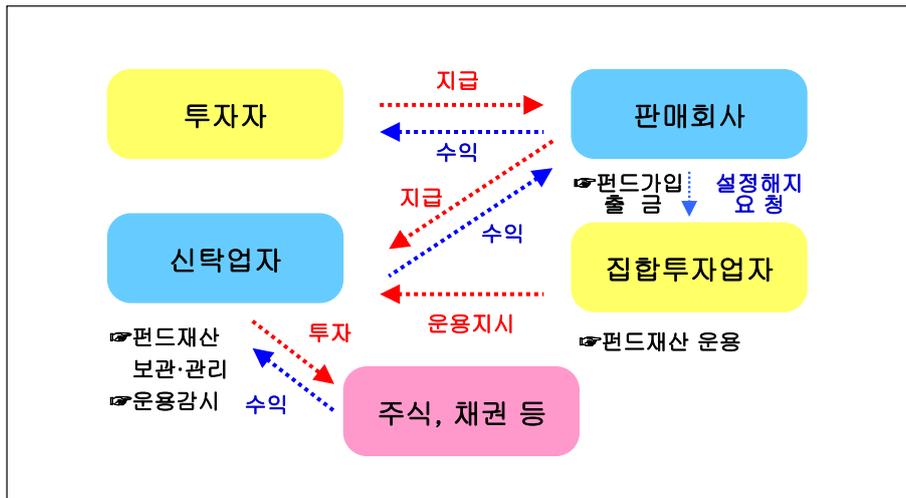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신한 비엔피 파riba 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18,19층 (대표전화 : 02-767-5777, 홈페이지 : www.shbnppam.com)
회 사 연 혁	2009.01 신한 비엔피 파riba 자산운용(주) 출범 (신한 비엔피 파riba 투자신탁운용(주)과 SH자산운용(주)의 합병) 2008.09 신한금융지주그룹, 비엔피 파riba 금융그룹 합작운용사 출범을 위한 MOU체결
자 본 금	754억원
주 요 주 주 현 황	신한금융지주(65%), 비엔피 파riba 그룹(35%)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대차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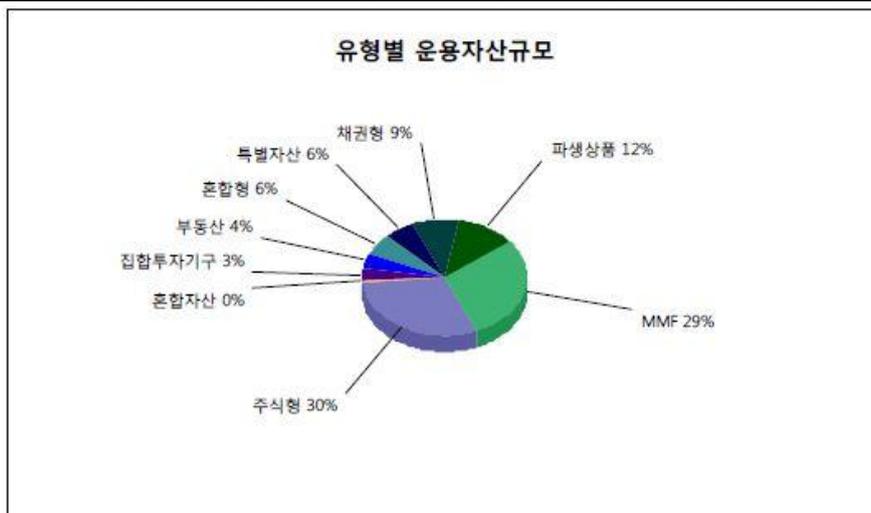
구분	제17기	제16기
	2013년3월말	2012년3월말
현금및예치금	137,102	132,291
유 가 증 권	13,867	15,049
대 출 채 권	1,479	1,564
유 형 자 산	1,324	1,914
기 타 자 산	23,392	24,226
자 산 총 계	177,164	175,044
예 수 부 채	4,592	5,227
기 타 부 채	18,081	15,159
부 채 총 계	22,673	20,386
자 본 금	75,374	75,374
자 본 잉여금	29,177	29,177
이 익 잉여금	49,919	49,63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	468
당 기 순이익	31,380	33,642
자 본 총 계	154,491	154,658
부채와자본총계	177,164	175,044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17기	제16기
	(12.04.01 ~13.03.31)	(11.04.01 ~ 12.03.31)
영업 수익	101,167	106,716
영업 비용	59,390	58,880
영업 이익	41,777	47,836
영업외수익	1,014	168
영업외비용	1,594	2,72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1,197	45,282
법인세비용	9,817	11,640
계속사업이익	31,380	33,642
당기순이익	31,380	33,642

라. 운용자산 규모 (2013.11.30 현재 / 단위 : 억원) (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집합투자 기구	파생 상품					
수탁고	61,306	11,774	18,705	7,093	23,452	8,711	11,946	888	59,582	203,45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계약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 합니다.

①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해당 펀드	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비엔피 파리바 에셋 매니지먼트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업무위탁범위	운용업무, 운용지시, 단순매매주문업무

②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명	비엔피 파리바 에셋 매니지먼트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회사주소	프랑스 파리 클레버 5 애비뉴 (5 Avenue KLEBER 75016 Paris, France)
회사개황	주요주주: BNP Paribas 그룹 100% 소유 1964 BNP PARIBAS 내 자산운용업 시작 2002. 10. BNP PARIBAS 그룹이 신한금융그룹과 합작하여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 지분 참여 2004. 8. 금융감독원에 외국자문회사 등록 2007년 초 BNPP AM 그룹의 운용규모는 약 1.835 조 EURO 홈페이지 : www.bnpparibas-am.com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25/ 02) 2004-0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hsbc.co.kr

2) 주요업무

(1)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계약 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 아이타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전화: 2180-0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1)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 소	연락처	인 터 넷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번지	02-399-3350	www.koreaap.com
나이스피앤아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KIS채권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02-3215-1400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주)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27	02-721-5300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애프앤자산평가주의 경우 국내채권(CD,CP)만 평가 및 제공함)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0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 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턴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 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 222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 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

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 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규약 제 50 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 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 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동 시행령 제3항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5)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법시행령 제 217 조제 3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

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또는 100 억 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

재하여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p>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p>	<p>집합투자업자인 신한 비엔피 파riba 자산운용(주)의 중개회사 선정기준입니다. 분기(필요시 변경가능)별로 내부 중개기관위원회(Broker Committee)에서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서치의 양과 질 -새로운 섹터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업무범위 -거래 실행력 -투자자의 최우선 가치 -비용/수수료 구조 -거래체결의 질과 완벽함 -신용과 평판의 질 -중개기관과 집합투자업자의 IT/통신 연결 -중개기관의 내부 준법감시 절차 <p>선택된 중개회사들의 거래량 분배는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합니다.</p>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린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자총회	신탁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